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2026년 5월 6일 해관총서령 제284호 공포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수출입 화장품의 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건강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식품등제품안전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 특별규정』 등 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수출입 화장품에 대한 검사검역 및 감독관리에 적용한다.

- 해관이 검사검역을 실시하는 수출입상품 목록에 등재된 것
- 관련 국제조약·법률·행정법규에 의하여 해관이 검사검역을 실시하도록 규정된 것

제3조 해관은 법에 따라 수출입 화장품에 대한 검사검역 및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해관은 리스크 관리 원칙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에서 규정한 적합성 평가 절차에 의거하여 수출입 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제4조 수출입 화장품의 생산경영자는 법률·행정법규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관리를 강화하며, 성실과 자율을 바탕으로 화장품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5조 해관은 현대 과학기술의 응용을 강화하고,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및 감독관리의 정보화·디지털화·지능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제2장 수입 화장품 검사검역

제6조 수입 화장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법에 따라 해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수입 화장품은 법에 따라 특수화장품 허가 또는 일반화장품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해관은 전자 데이터 자동 대조를 통하여 이를 검증한다.

제7조 해관은 중국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적 요구사항에 따라 수입 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중국에서 아직 강제적 요구사항에 관한 국가기술규범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관총서가 지정한 외국의 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수입 화장품은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한 목적지에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무역 편의 및 수입검사 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검사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해관은 감독관리의 필요에 따라 수입 화장품에 대하여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험실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샘플링을 실시하고 샘플링 증빙을 발급하며, 이를 검사기관에 송부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기관은 법에 따라 해당 자격, 인증을 취득하고, 요건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며 규정된 기한 내에 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0조 해관은 법에 따라 수입 화장품 라벨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해관총서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11조 수입 화장품이 검사에 합격한 경우, 해관은 법에 따라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입 화장품이 해관의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안전·건강·환경보호 관련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관이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한다. 그 밖의 항목이 불합격인 경우에는 해관의 감독 하에 기술적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재검사를 통하여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판매·사용할 수 있다. 기술적 처리를 할 수 없거나 기술적 처리 후에도 여전히 불합격인 경우에는 해관이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한다.

제12조 수입업자는 수입 화장품의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기록은 진실하고 완전해야 하고 추적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기록의 보존 기한은 제품 사용기한 만료 후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품의 사용기한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록 보존 기한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 수입 화장품의 허가 또는 등록 신청용 샘플, 기업의 검사·연구개발 및 홍보용 비시용(非試用) 샘플의 경우, 신고 시 샘플의 사용 및 처리 현황 설명서, 비판매 사용 협약서 및 해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수량이 합리적인 사용 범위 내인 경우 해관이 검사를 면제한다. 수입업자는 화장품의 유통경로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기록 보존 기한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 주중 외국 외교영사기관 및 외교 특권·면제를 향유하는 국제기구 주중 대표기관이 공무용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화장품은 검사를 면제한다. 필요한 경우, 해관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해외에서 전염병 등이 발생하여 수입 화장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관은 법에 따라 수입 화장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제3장 수출 화장품 검사검역

제16조 수출 화장품은 수입국(지역)의 기준 또는 계약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수입국(지역)에 관련 기준이 없고 계약에도 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해관총서가 관련 기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 수출 화장품 생산기업은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8조 수출 화장품은 생산지에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무역 편의 및 수출검사 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검사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 화장품을 수출하기 전, 생산기업·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법에 따라 해관에 검사를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0조 해관이 감독관리의 필요에 따라 수출 화장품에 대하여 현장 검사 및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 방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1조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화장품 수출 시 법에 따라 해관에 사실

대로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해관은 감독관리의 필요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수출 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제22조 수출 화장품이 해관의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수출을 허가한다. 수입국(지역)에서 검사증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관이 검사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출 화장품이 해관의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해관의 감독 하에 기술적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재검사를 통하여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기술적 처리를 할 수 없거나 기술적 처리 후에도 여전히 불합격인 경우에는 수출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임가공 후 전량 재수출하는 화장품의 경우, 원료 수입 시 재수출 예정국(지역)의 법규 또는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국 기준에 따른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가공 후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지역)의 기준 또는 계약 요건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제24조 국내에서 전염병 등이 발생하여 수출 화장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관은 법에 따라 수출 화장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25조 해관은 본 방법에서 규정한 해관의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수출입 화장품 이외의 수출입 화장품에 대하여 국가 규정에 따라 무작위 표본 검사를 실시한다.

제26조 해관은 수출입 화장품 안전에 대하여 리스크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수출입 화장품 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27조 수출입 화장품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거나, 국내외에서 화장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여 수출입 화장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관은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리스크 수준에 상응하는 다음 각 호의 처리 조치를 법에 따라 취할 수 있다.

(1)검사 항목 추가, 검사 빈도 상향 조정

(2)리스크 사전경보 발령 또는 관련 부서에 통보

(3)수입 잠정 중단

(4)해관총서가 규정한 기타 조치

수출입 화장품이 인체 건강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관총서는 직접 필요한 긴급 처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출입 화장품의 리스크 수준이 변화한 경우, 해관은 리스크 처리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 수출입 화장품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여 인체 건강과 생명 안전에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입 화장품의 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즉시 해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29조 해관은 법에 따라 수입 화장품의 수하인, 수출 화장품의 생산기업 및 송하인에 대하여 신용관리를 실시하고 분류관리 조치를 취한다.

제30조 수입 화장품의 수하인, 수출 화장품의 생산기업 또는 송하인이 해관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입상품 재검사 관련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관은 재검사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1)검사 결과 미생물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2)제품이 사용기한을 초과한 경우

(3)기타 사유로 재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제5장 법적 책임

제31조 수입 화장품 수하인이 반송 또는 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관은 경고 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2조 수출입 화장품의 생산경영자가 기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33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화장품 및 전시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화장품의 검사검역 및 감독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4조 수출입 비누는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화장품의 효능을 표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출입 치약, 화장품 반제품은 본 방법에 준하여 관리한다. 해관은 수입 단계에서 화장품 반제품의 허가 또는 등록 검증, 라벨 검증을 면제한다.

제35조 본 방법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1)화장품이란, 도포·분무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피부·모발·손발톱·입술 등 인체 표면에 사용하여 세정·보호·미화·수식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 화학공업 제품을 말한다.

(2)화장품 반제품이란, 최종 '충전' 또는 '소분'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생산·가공 공정을 완료한 제품을 말한다.

제36조 본 방법의 해석은 해관총서가 담당한다.

제37조 본 방법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1년 8월 10일 구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43호로 공포되고, 2018년 4월 28일 해관총서령 제238호, 2018년 5월 29일 해관총서령 제240호,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로 일부 개정된 『수출입 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